

# 남북 인도적 협력을 위한 접경지역 보건의료 · 방역 협력의 추진방안<sup>1)</sup>

강민조 |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 mjok@krihs.re.kr

## I. 머리말

최근 초국경 질병인 코로나19, 말라리아,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 등 감염병의 유입과 확산 방지를 위하여 남북 접경지역에서는 보건의료 · 방역 협력의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다. 현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95(‘남북간 인도적 문제해결 도모’)에서 북한 호응 시 코로나19 관련 긴급지원 및 「한반도 보건의료협력 플랫폼」 등을 통한 민관 상시 인도적 협력체계 구축<sup>2)</sup>을 제안하였다. 무엇보다도 주요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의 ‘초기 조치’ 단계에서는 보건의료 등의 민생 개선 시범사업을 통해 실질적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 단계별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을 발표하였다.<sup>3)</sup> 초국경 협력이 필요한 보건의료 · 방역 협력 등 인간안보<sup>4)</sup> 분야의 남북협력을 통해 남북간 신뢰를 구축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북한 비핵화의 선순환 체계 구축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실험의 장이 될 수 있는 곳이 바로 남북 접경지역이다. 향후 북한이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고 남북대화가 재개될 시기에 이르면 남북 접경지역은 인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및 방역 협력 등을 통해 남북 상호 호혜성을 바탕으로 국격에 맞는 남북관계를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정립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1) 본고는 강민조 외, 「남북 인도적 협력을 위한 접경지역 방역협력의 기본구상」, 2022 보고서를 발췌 및 정리한 것이다.  
2)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2022, p.161.  
3) 통일부,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 윤석열 정부」, 2022, p.18.  
4) 인간안보란 기아·질병·탄압과 같은 만성적 위협으로부터 보호의 측면, 그리고 가정·직장·사회에서 발생하는 급작스러운 위협으로부터 안전의 측면을 두루 지니며, 구체적으로 인간 안보는 일곱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경제 안보, 식량 안보, 건강 안보, 환경 안보, 개인 안전(교문·전쟁·탄압·범죄·젠더폭력·아동학대 등), 공동체 차원의 안전, 정치 안보(「한겨레」, 「인간안보를 다시 생각한다」, 2020. 5. 19).

북한 또한 코로나19 발생 이후 2020년 국정과제에서 방역 및 보건의료 사업을 우선순위로 지정했을 뿐만 아니라 최우선 과제로 평양종합병원 건설을 선정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초국경 질병인 감염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질병 영향권 내 모든 국가의 협력이 필수적인바, 남북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북간 인도적 협력을 위하여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방역협력의 기본방향과 이를 기반으로 한 대북제재 상황과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단계별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 II. 인도적 협력을 위한 접경지역 방역협력의 필요성

코로나19로 인하여 남북은 남북 공동의 방역협력이 시급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과거에도 남북이 보건의료 협력 방안을 협의한 바 있으며, 말라리아·구제역·신종플루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과 함께 지자체 주도적으로 산림 병충해 방제, 수해 지원 등에 성공한 사례가 있다. 따라서 남북한이 함께 직면한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한 단기적 긴급 대응에서부터 보건의료 및 방역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대응하는데 있어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남북 접경지역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남북 공동의 방역협력이 요구되는 남북 접경지역은, 우선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하여 국가·국경 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인도적 협력 공간, 즉 ‘월경성 감염병 및 전염병 예방과 대응을 위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 상대측 지역에서 발생한 감염병, 산림 병충해, 산불 등에 대한 자연·사회 재난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비무장지대를 포함한 접경지역에서는 말라리아가 경계를 넘어 남북한 주민과 군인들에게까지 피해를 준 사례가 있으며, 최근 ASF의 경우에는 남북 접경지역에 집중되어 발생한바, 남북이 공동으로 대응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남북 접경지역은 보건의료·방역협력의 ‘인도적 공간’, 즉 ‘남북간 인도적 협력 공간’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곳이다. 정치적·군사적 영향에서 탈피하여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남북 접경지역에 ‘인도적 공간’의 개념을 적용(장은하, 2014)할 수 있다. 즉, 남북 접경지역에 인도적 지원 공간 개념을 적용하여 인도적 지원을 수행하는 데 정치적인 영향을 받지 않으며 남북한 지역주민의 불신이나 저항 없이 물리적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적인 공간으로 삼는 것이다. ‘인도적 지원 수행 환경(Humanitarian

Operating Environment)’, ‘인도적 통로(Humanitarian Corridor)’와 유사한 개념의 공간이다. 이러한 공간에서는 무엇보다도 비정치적이고 비군사적인 인도적 활동을 수행한다고 분쟁 당사자와 지역주민 스스로를 인식시킨다는 데 의미가 있다(장은하, 2014).

보건의료·방역 및 산림·수자원 등의 환경협력을 포함한 인간안보 분야의 남북협력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하에서 면제 승인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검색된 남북관계를 복원할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남북 접경지역’은 인간안보 분야 중 하나인 방역협력의 ‘실험의 장(test-bed)’ 공간으로 개념을 정립할 수 있다. 결핵, 말라리아, B형간염 외에도 북한에서 신종플루, 사스, 메르스, 조류독감, ASF 등의 전염병이 발생하고 있으나 구체적 현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공동으로 정보를 구축할 수 있는 ‘실험의 장(test-bed)’으로 ‘남북 접경지역’을 정의 내릴 수 있다. 즉, ‘남북 접경지역’은 동·서독의 사례와 같이 대북제재하에서도 가능한 의료 기자재, 의약품, 방역물품 등의 인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남북 보건의료·방역 분야의 전문가 교류 및 공동 연구 수행, 남북 방역협력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간으로서 남북 방역협력의 ‘실험의 장’이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관련하여 보건의료 및 방역 분야의 남북 접경협력 사업은 대북제재 면제라는 국제적 합의를 유도해 낼 수 있다.

### III. 남북 접경지역 방역협력의 추진방안

#### 1. 남북 접경지역 거점 기반의 방역협력 기본방향

남북 인도적 협력을 위한 접경지역 방역협력의 3대 목표 중 하나는 남북 보건의료·방역협력을 통해 ‘남북 그린데탕트’ 구현을 위한 추진방향 중의 하나인 접경지역의 ‘그린평화시대화’를 도모하는 데 있다. 윤석열 정부는 ‘남북 그린데탕트(국정과제 94)’ 구현이라는 목표하에서 남북간 긴장 완화 혹은 평화 구축이라는 목표를 이전 정부와 공유하였다. 그러나 현 정부의 그린데탕트는 환경 이슈에 국한하던 과거 정부와는 달리 통일·안보 이슈 기반의 환경협력과 북한주민들의 삶과 연계하는 것이다. 즉, 과거에는 경제성장이나 환경생태에만 초점을 두고 있었다면, 현 정부의 그린데탕트는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 등 인도적 협력까지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는 데에 차이가 있다.

두 번째 목표는 ‘전통적 안보’에서 탈피하여 ‘포괄적 안보’를 도입함으로써 남북 보건의료·

방역 협력을 통해 남북한 주민의 안전과 생명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마지막 목표는 남북 접경지역을 보건의료·방역 협력을 위한 ‘인도적 협력의 공간’으로 삼아 남북간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다. 접경지역은 단계적·점진적 남북 교류협력을 위해 남북을 이어주는 관문이자 급진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완충지대인바, 남북 보건의료·방역 협력을 통해 초기에는 ‘인도적 협력의 공간’으로서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향후 남북간 경제협력 및 지역개발을 도모하는 마중물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남북 접경지역 방역협력의 목표하에 다섯 가지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였다. 남북 접경지역 방역협력의 첫 번째 기본방향은 ‘인도적 협력’ 공간으로서 남북 접경지역의 거점을 조성하는 데 있다. 남북 접경지역은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해 협력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인도적 통로 및 공간 개념을 적용하여 ‘실험의 장(test-bed)’로서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지역별 감염병 및 산림병해충 등의 발생 현황과 특성을 고려하여 방역협력 분야별(인간감염병, 가축전염병, 산림병해충) 거점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남북 접경지역 방역협력의 두 번째 기본방향은 남북 방역협력 거점에 남북 공동의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북한은 감염병 및 병해충 등에 대한 보건의료·방역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간 보건의료·방역 관련 정보교류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효율적인 협력을 위해서는 보건의료·방역 정보를 남북이 공동으로 구축하고 공유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남북관계의 개선으로 남북간 인적교류가 가능한 시기에 이르면 방역협력의 거점 공간에서는 남북 보건의료·방역 관련 연구기술 교류 및 개발이 이뤄질 수 있다. 과거 남북은 접경지역의 산림협력 등의 방역협력 성공 사례를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남한의 의료방역 기술 지원, 북한의 낙후한 보건의료·방역 인프라 개선의 기회, 월경성 전염병에 대한 남북간 합의사항이 존재하므로 이를 기반으로 한 백신과 치료제 개발 등 남북 공동의 연구·기술 교류와 개발을 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또한 남북 보건의료·방역협력을 위해서는 남북 및 국제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이다. 인도적 지원 측면에서 살펴보면, 대북제재 면제 대상인 북한의 감염병 방역은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유도하는 데 용이할 수 있다. 그러나 포괄적 안보 차원에서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남북 접경협력 협의체 및 거버넌스가 부재하므로 지속가능성 있는 남북 방역협력을 위해서는 남북 및 국제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남북 공동의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남북의 서로 상이한 보건의료·방역 제도 및 체계, 남북 접경지역의 보건의료·방역 협력을 위한 법·제도, 소요 재원

조달의 불안정성이 남북 방역협력의 위협 요인 및 약점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남북 공동의 보건의료 · 방역 협력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다.

## 2. 남북 접경지역 방역협력의 단계별 추진방안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및 남북관계 상황 변화를 고려하여 남북 접경지역 방역협력의 기본방향에 따른 남북협력 초기 · 확대 · 심화의 단계별 추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남북협력 초기에는 남북 보건의료 · 방역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현 대북제재하에서 국제사회의 지지와 동의를 필요하므로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남북 접경지역의 분야별 거점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북한에 대한 의료 기자재, 의약품, 방역물품 등의 인도적 지원에서부터 남북 방역협력을 시작할 수 있다. 또한 남북 방역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남북간 방역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문제를 진단하여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감염병 또는 병해충 등의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

다음으로 남북협력 확대 단계에서는 북한의 보건의료 · 방역 협력 관련 법 · 제도 정비, 남북간 중앙부처 및 접경지역 지자체 간 연계협력을 통한 남북 공동의 방역지구 조성을 통해 남북 공동방역, 남북 의료 · 보건 · 방역 분야의 전문가 교류 등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의 백신 또는 방제 관련 생약제 생산기술 지원뿐만 아니라 남북 공동의 표준화, 기술 활용 협약 체결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북측 제도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남북접경 위원회'의 설치 및 추진체계를 구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남북협력 심화 단계에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지고 대북제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을 전제로 하여 남북 방역협력의 거점지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남북 공동의 보건의료 · 방역협력 사업을 시행하고, 실무단을 구성하는 등의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sup>5)</sup> 무엇보다도 남북협력 차원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남북대화의 상설기구 또는 협의체 등을 구성함으로써 남북간 보건의료 · 방역 관련 합의서 작성, 남북 공동의 제도 마련 등을 통해 지속가능하면서도 상호 호혜적인 남북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남북 주민들의 공감대를 확보해 나가야 한다.

5) 강민조 외,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종합 발전구상과 실천방안 연구Ⅲ』, 국토연구원, 2020, pp.164~166.

<표 1> 남북 접경지역 보건의료·방역 협력의 단계별 추진방안

기본방향	남북협력 초기	남북협력 확대	남북협력 심화
남북 방역협력 거점 조성 및 인도적 방역 서비스 (방역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점지역 선정 기준에 대한 남한 내 접경지역 지자체 및 이해당사자들 간의 합의 도출</li> <li>- 남북 방역협력 거점 후보 지역에 대한 상호 합의</li> <li>- 긴급 방역지원을 위한 남한 지자체의 거점 관련 조례 제정 및 특별구역 지정</li> <li>- 긴급 방역지역에 대한 초기 방역 진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측과의 적극적 의사소통을 통한 북측 실태 파악 및 거점 조성</li> <li>- 보건의료·방역 부문 세부 과제별 거점지역 선정 및 조성</li> <li>- 남북 방역협력 거점시설 공동 운영</li> <li>- 인간감염병, 가축전염병, 산림병해충별 모니터링 포인트 선정</li> <li>- 감염병 및 병해충 대응약품·약제 시험을 위한 시범 대상지 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협력 거점지를 대상으로 보건의료·방역협력사업 실시</li> <li>- 거점 활성화를 위한 접근성 확대(남북 도로·철도 연결 등을 통한 방역 교류·물자 운송 체계 구축)</li> <li>- 국제적 협력 거점으로 확대</li> </ul>
남북 방역 정보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 방역 정보 공유 및 문제 진단</li> <li>- 남북간 정보교환 협약 추진</li> <li>- 남북 협약 의제 확정 및 이를 위한 남북 연락사무소 재설치 및 방역 관련 정보 공유</li> <li>-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북한 감염병/병해충 현황 파악</li> <li>- 보건의료·방역 관련 DB 구축을 위한 시스템 및 관리방안 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DB 아카이브 구축</li> <li>- 보건의료·방역 관련 문제 및 대응 정보 상호 공유를 위한 남북 공동의 모니터링 시행</li> <li>- 보건의료·방역 관련 문제 발생 시 남북 공동 대응 지침 마련 및 공동 대응 협약 체결</li> <li>- 남북 전역으로 보건의료·방역 관련 정보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남북 공동 대응방안 마련</li> <li>- 남북 공동 방역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DB화</li> <li>- 남북 공동의 주기적·정기적 현황 모니터링 및 검증 체계 구축</li> <li>- 국제기구와 협력을 통해 남북 공동의 정보시스템 구축·관리 확대(지속가능성 확보)</li> </ul>
남북 연구기술 교류 및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한 내 전문가들에 의한 남북한 공유 및 교류 가능 연구·기술 목록 작성</li> <li>- 남북 백신 및 방제약 개발 현황 공유</li> <li>- 남북 전문가 회의 개최 및 연구·기술 교류 및 개발계획 공동수립</li> <li>- 거점시설 상주 연구인력 파견</li> <li>- 연구인력 교육 및 능력 배양</li> <li>- 전문가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 연구기술 개발을 위한 전문가 교류</li> <li>- 남북 공동 연구개발 협의체 및 연구소 구성</li> <li>- 북한 백신 또는 방제 관련 생약제 생산기술 지원, 표준화, 기술 활용 협약체결</li> <li>- 시범 대상지역에 대한 약품, 약제 공동 시험</li> <li>- '한반도방역연구소(가칭)' 설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 공동 연구 및 기술개발</li> <li>- 남북 공동생산 체계 구축</li> <li>- 남북 공동 연구소(센터) 활성화</li> <li>- 남북 공동 방역 성과 간행물 발간</li> <li>- 백신 및 방제약 개발을 위한 연구인력 양성</li> <li>- 연구시설 확충 및 고도화</li> <li>- 연구결과 상용화</li> </ul>
남북 및 국제 거버넌스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의 WHO 등 관련 국제기구 참여 촉진 및 상설기구 구축</li> <li>- 남북 보건의료 전문가 교류 추진</li> <li>- 남한 중앙정부·지자체·전문가·지역주민 협의체 구성</li> <li>- 남한 내 이해 당사자 및 정부와 국제기구 간 의사소통 시도 및 협의체 구성</li> <li>- '남북접경위원회' 설치 합의</li> <li>- 남북접경방역 협의 채널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기구와 협업을 통해 남북 보건의료·방역협력 추진</li> <li>- '남북보건의료협력협의체(가칭)' 구성 및 '남북접경위원회' 설치 및 추진체계 구성</li> <li>- 인접 국가(동북아 등)들을 포함한 국제적 협의체 구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한 내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남북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신뢰 축적</li> <li>- '남북접경지역공동관리 위원회(가칭)' 구성</li> <li>- UN 등의 국제기구와 '남북·국제방역협력플랫폼(가칭)' 구축</li> </ul>

기본방향	남북협력 초기	남북협력 확대	남북협력 심화
남북 공동의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한의 대북 인도적 지원 · 협력 관련 특별법 제정</li> <li>- 남한 법 · 제도 개선 및 제정 (접경지역 인접 지자체들의 조례 제정)</li> <li>- 긴급 방역 및 지원을 위한 통관 절차 마련 및 제도 개선</li> <li>- 남북 방역협력을 위한 기금 마련 및 조달 방안 수립 (예: 남북협력기금의 예비비 및 특별회계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측 제도 정비방안 제시(북한의 보건의료 · 방역 관련 법 · 제도 개선방안 마련)</li> <li>- 북한과 남한의 관련 법규의 조정</li> <li>- 남북한 통합 법 · 제도 협의</li> <li>- 남북 접경지역 활용에 대한 합의문 작성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 공동의 법 · 제도 마련 합의</li> <li>- 남북 공동의 방역협력을 위한 법 · 제도 제정 (남북 공동의 보건의료 · 방역 및 접경지역 관리에 관한 법규)</li> <li>- 남북 방역 가이드라인 개발</li> <li>- 국제표준에 부합한 제도적 방향성 정립</li> <li>- 한반도 내의 상황 변화에 따른 주기적 법 · 제도 개선</li> </ul>

자료: 강민조 외, 『남북 인도적 협력을 위한 접경지역 방역협력의 기본구상』, 2022, p.164.

## IV. 정책제안

남북간 인도적 협력 차원에서 접경지역의 보건의료 · 방역협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북간 신속한 상호 연락과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방역협력은 최소한의 대화 재개와 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를 전제로 우선 추진될 수 있는 남북 공동의 관심사라는 점에서 중요하며, 최우선적인 과제는 연락과 대응체계 구축이다. 2007년 제1차 남북 보건의료 합의서의 제3항에서는 전염병 통제를 위해 예방약 및 냉장운반장치, 구급차, 진단시약, 치료제 제공, 남북 사이에 상호영향을 미치는 전염병 퇴치 공동 노력과 실태조사 자료 교환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이에 기반하여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활용해 남북간 주기적 · 상시적 감염병 정보를 공유하고 위기 발생 시 신속한 상호 연락과 대응체계 구축을 추진한 바 있으나 실질적인 활용 사례는 없었다.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로 합의된 평양공동선언문(2018. 9. 19)에서는 남북 환경협력(산림분야 협력), 방역 및 보건의료 분야 협력 강화를 제시한 바 있다. 새로운 남북대화가 진행되기 이전까지는 기존의 합의에 기반한 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으므로 남북간 방역협력은 남북대화 재개 이후 조기에 추진할 수 있는 영역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미 추진되었던 상호연락 및 대응 체계 구축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의 재설치가 전제되어야 한다.

남북협력사업은 인도적 지원 이외에는 정치적 · 군사적 영향으로 인하여 중단될 수 있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남북 접경협력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UN 등과의 국제기구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접경위원회의 추진 체계 구성도 중앙정부

및 지자체와 민관협의체로 구성해야 한다. 동·서독 접경위원회 사례와 같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정부와 분야별 전문가 간,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협력과 유대를 통해 정부의 정책목표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다음으로 접경지역 관련 법·제도적 개선<sup>6)</sup>이 수반되어야 한다. 접경협력 관련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이 필요하다.<sup>7)</sup>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자연환경보전법」 등에서는 비무장지대 내 행위 제한과 관련하여 일부 내용만을 규율하고 있으므로,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체계적으로 비무장지대를 보전하고 평화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본다.

---

6) 강민조 외,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종합 발전구상과 실천방안 연구 III』, 국토연구원, 2020, pp.176~179 보완 및 업데이트.  
7)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전혜철 의원 대표발의), 2020. 10. 20.

## 참고문헌

강민조 외,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종합 발전구상과 실천방안 연구Ⅱ』, 국토연구원, 2019.

강민조 외,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종합 발전구상과 실천방안 연구Ⅲ』, 국토연구원, 2020.

강민조 외, 『남북 인도적 협력을 위한 접경지역 방역협력의 기본구상』, 국토연구원, 2022.

장은하, 『분쟁지역에서의 인도적 지원: 인도적 공간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국제개발협력, 한국국제협력단, 2014.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2022.

통일부,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 윤석열 정부 통일·대북정책』, 2022.

<웹사이트>

『한겨레』, 「인간안보를 다시 생각한다」, 2020. 5. 19.